

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행정처분기준(제213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 법 조문	처분내용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전문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72조제5 항제1호	지정취소
2.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가.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나.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다. 교육에 필요한 적정인력의 교관을 확보하 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5 항제2호	업무정지(30일)